

[별지 제62호서식의(가)] (규칙 제146조의2제1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「공직선거법」 위반혐의 소명서

1. 제출자

주 소			
성 명		생년월일(성별)	
공선법상신분		전화번호	

2. 위반혐의내용

혐의자	성명		주소	
	직업		전화번호	
발생일시				
발생장소				
혐의내용		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		
적용법조				
증인 또는 제출증거물				

「공직선거법」 제272조의2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1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명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○ ○ ○ 인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○○선거관리위원회

제 목 출석요구

다 음

년 월 일

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[인]

[별지 제62호서식의(다)] (규칙 제143조의3제3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

<별지 제1호> 봉투

(앞 면)

최초작성기관명		
사건번호	사 경	
	검 찰	
	법 원	
관 리 번 호		년 호

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

(뒷 면)

신원관리카드 송부·열람·관리자등 현황								
카드 송부	송부일자	송 부 자			접수일자	접 수 자		
		소 속	직 위 (직급)	성 명		소 속	직 위 (직급)	성 명
열람	열람일자	열 램 자			열 램 사 유			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		
관리 검사 지정	지 정 일 자				관 리 검 사			
선거 범죄 신고 자등 면담 신청	신청일자	신 청 자			신 청 사 유		면담일자	
		성 명	선거범죄신고자등(또는 피고인)과의 관계					
주요 변동 상황 통지	통지일자	담 당 자			통 지 내 용			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		

257mm×364mm(인쇄용지 특급 70g/㎡)

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										
관 리 번 호										
사 건 번 호										
법 원 사 건 번 호										
피의자(피고인)성 명						주 입 검 사				
선거범죄신고자 등 인 적 사 항		성 명				가 명				
		주민등록번호				직 업				
		등 록 기 준 지				전 화 번 호				
		주 소								
		본 인 서 명		본명				신 분		
가명										
작 성 원 인		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신청, 선거관리위원회 위원·직원의 직권, 사법경찰관의 직권, 검사의 직권, 판사의 작성요청								
최 초 작 성 일 자						최 초 작 성 자		서명 또는 날인		
신 원 관 리 카 드 접 수 일 자						사 건 종 국 결 정 일 자				
보 좌 인	성 명	주소 (전화 번호)	직업	피보좌 인과의 관 계	직권 신청	신 청 일 자	사법경찰관의 허가신청일자	지정 일자	지정자	비 고
	주 민 등 록 번 호					신청인	검사의 허가일자			
1										
2										

(뒷 면)

번호인		선임기간				성명			
		선임기간				성명			
신변안전 조치	피의자(피고인) 와의관계		종류	신청(지시· 요청)일자	조치기관	조치일자		조치사항	
	신청인과의 관계			신청(지시· 요청)일자					
1									
2									
구조금 지급	신청인	성명(가명)				선거범죄신고자 등과의 관계			
		주민등록번호				직업			
		주소				전화번호			
	결정	결정위원회				결정일자			
		결정내용				결정통지일자			
	지급	청구일자				청구금액			
		지급일자				지급금액			

210mm×297mm(보존용지(1종) 120g/㎡)

[별지 제62호서식의(라)] <개정 2005.8.4>

○○선거관리위원회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제 목 포상금 지급 추천

「공직선거법」 제262조의3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 제1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추천합니다.

포상대상자 인 적 사 항	성 명		생년월일	
			주 소	
포 상 사 유 (신고요지 및 그처리결과)				
포상금액에 관 한 의 견				
비 고				

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[인]

주

1. 포상대상자가 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하고, 익명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할 수 있다.
2. "포상사유"란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.
3. "비고"란에는 포상금 지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

[별지 제62호서식의(마)] <개정 2013.8.13>

제 호			
(기탁금)·(보전비용)·(포상금)반환고지서			
반 환 의 무 자	(명칭)·(성명)		
	주 소		
반 환 할 금 액	계	기 탁 금	선 거 비 용
반환할 예금계좌	(예금주명 :)		
[「공직선거법」 제57조 및 제122조의2에 따라 (귀당에)·(귀하에게)반환·보전한 금액을 같은 법 제265조의2에 따라]·[「공직선거법」 제262조의3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포상금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] 반환할 것을 알리니 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(관할 세무서장)·(○○시장·도지사)·(○○구청장·시장·군수)에게 맡겨 (국세)·(지방세)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[인]			

주 :포상금 반환고지서의 경우에는 "반환할 금액"란은 "계"."기탁금"."보전비용"란으로 나누지 아니한다.

[별지 제62호서식의(바)] (규칙 제146조의4제4항 관련) <개정 2021. 10. 22.>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(전화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, FAX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)		승 인 권 자				
		직위		승인 일자	년 월 일	
		가			부	

문서번호 ○○○○-

수 신 ○○법원 수석판사

제 목 (통신자료)·(전화자료) 제출요청 승인신청

발신일자 년 월 일

발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 ○○○ (인)

「공직선거법」 제272조의3(제1항)·(제2항)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(통신자료)·(전화자료)의 (열람)·(제출)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 적 사 항	성 명		주민등록번호	
	주 소		직 업	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명				
요 청 사 유				
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				
필요한 자료의 범위				
사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승인을 얻지 못한 사유				

불 입 : 관련자료 사본 ○부

[별지 제62호서식의(사)] (규칙 제146조의4제4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(전화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, FAX: ○○-○○○-○○○○)	
문서번호 ○○○○- 수 신 제 목 (통신자료)·(전화자료) 제출요청	발신일자 년 월 일 발 신 ○○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(인)
「공직선거법」 제272조의3(제1항)·(제2항)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음 사람에게 대한 (통신자료)·(전화자료)의 (열람)·(제출)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성 명	
주 민 등 록 번 호	
주 소	
직 업	
요 청 사 유	
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	
필요한 자료의 범위	
승인권자의 승인없이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	
붙 임 : 승인서 사본 1통	

주: 법 제272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승인서 사본을 붙이지 않습니다.